

차별금지법의 역사(略史)와

2020년 법안 분석

박종운 변호사

[전]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

법률영역에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자비량

사회선교사



헌법 제11조

-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
- 누구든지
- 성별 ·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
- 정치적 · 경제적 · 사회적 ·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I. 차이와 차별

사람이란 각자 개성, 특성, 독특함이라는 이름의 '다름'
혹은 '차이'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

-> 때론 '존중', 때론 '배려', 때론 '교정'의 대상

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'차이/다름'
- 다수/권력/서열화/계층화...
-> 수직적 위계질서
=> '차별'로 전환

- 일상생활에서 ‘차별’이라는 단어
- 인권 관점에서 금지되는 ‘차별’

혐오(hate) : 특정 소수자 개인/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 또는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

차별(discrimination) : 편견과 혐오가 자라나서 실제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

혐오+차별은?

혐오가 혐오를 재생산, 차별은 차별을 낳고, 혐오와 차별은 재확산 피해는 ? 주로 사회적 약자/소수자 개인 및 집단에 집중

“사회적인 분쟁과 갈등은 만연해지고,
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”

차별금지법 : 개별적 vs. 포괄적

개별적 차별금지법 :

차별금지사유는 1개

차별금지영역은 폭넓게

포괄적 차별금지법 :

차별금지사유가 여러 개

차별금지영역은 공통영역만

II. 차별금지법 제정 역사[略史]

-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[시행 2001. 11. 25.]
- 200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시작
-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
- 2004년~2006년 국가인권위 차원의 차별금지법안 논의(사회적 차별금지법)
- 2006년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및 차별금지법안 발표 => 참여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
-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안 입법 예고(2007. 10.) 발의(2007. 12.)

- ‘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’ 결성 (2007.12)
- 2008~2013 수차례의 개별적,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(17,18,19대 의원발의, 노희찬, 박은수, 최원식, 권영길, 김재연...)
- 이명박 정부 :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설치, 동등대우법안 성안
- 박근혜 정부 : 국정 과제 채택, 차별금지법 TF 설치, 동등대우법안 성안
- (학생)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대두(2010~)
- 2020. 6.29.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“차별금지법”
- 2020. 6.30.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시안 “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”

III. 2020년 법안 비교

제1장 총칙 : 목적, 용어의 정의, 차별의 개념(차별금지 사유),

차별의 예외(합리적 이유, 진정직업자격, 적극적 조치, 과도한 부담 등)

제2장 국가/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

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 조치 : 차별금지 영역(고용, 재화/용역 등,

교육기관의 교육/직업훈련, 행정/사법 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/이용)

제4장 차별의 구제

제5장 벌칙

<차별금지법안> vs. <평등법시안> 조문대비

<차별금지법안> vs. <평등법시안> 쟁점비교

2020년 <차별금지법안> vs. <평등법시안> 비교

| | 「차별금지법안」 2020년 장혜영 대표발의안 | 「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」 2020년 인권위 의견표명 시안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1장 총칙 | | |
| 차별 금지 사유 | - 23개 사유 예시적 규정 - 인권위법 19개 차별금지사유 + 언어, 국적, 성별정체성, 고용형태 | - 21개 사유 예시적 규정 - 인권위법 19개 차별금지사유 + 성별정체성, 고용형태 |
| 차별개념 | (공통) ①직접차별, ②간접차별, ③괴롭힘, ④성희롱, ⑤차별 표시·조장 광고 ⑥복합차별 명시 | |
| (직접차별) | (공통)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·구별·제한·배제·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| |
| (간접차별) |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| 외견상 중립적 기준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 입증 못한 경우 |
| (괴롭힘) |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·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| ①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,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, ②수치심, 모욕감, 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, ③멸시, 모욕,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,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여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|
| (성희롱) | ①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, ②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③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| 업무, 고용, 교육,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, 근로자 또는 업무관련자, 공공기관 종사자가, ①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한 성적 언동 또는 요구하는 경우, ②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, ③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|
| (차별표시조장광고) |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·구별·제한·배제·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[*광고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 없음] |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·구별·제한·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[*광고에 대한 정의규정에 따라 정부광고, 옥외광고, 상업광고, 의견광고 포함] |
| (복합차별) |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| (없음) |
| 차별영역 | (공통) ①고용, ②재화·용역·시설, ③교육·훈련, ④행정서비스 등 [* ①직접차별, ②간접차별, ③괴롭힘, ④성희롱은 위 4가지 차별영역에 한정되며, ⑤차별 표시·조장 광고는 차별영역에 한정되지 않음] | |
| 차별예외 | (공통) ①진정(직업)자격, ②잠정적 우대조치 (없음) | ③다른 법률의 규정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|

| | | 「차별금지법안」 2020년 장혜영 대표발의안 | 「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」 2020년 인권위 의견표명 시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
|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| | | |
| 국가 지자체 의무 | (공통) 기존 법령, 조례와 규칙,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시정 | | |
| | (없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령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- 재난상황에서의 긴급조치 시 비차별 및 소수자 보호 원칙의 특별 규정 - 교육·홍보 등 통한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조치 - 재일마련 및 연구개발 지원 | |
| 차별시정 계획 | (공통) -정부/대통령의 5년 단위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 의무 -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 | | |
|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| | | |
| 고용 | (공통) 모집·채용, 임금, 임금외 금품, 교육·훈련, 배치, 승진, 근로조건, 해고 등에서의 차별금지, 사용자 편의제공 의무 규정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계약 차별적 부분 무효 및 수정간주 - 노동조합, 직업소개기관 등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| (없음) | |
| 재화 용역 | (공통) 금융서비스, 교통수단, 시설물, 토지·주거시설, 보건의료서비스, 신문·방송, 문화·체육·오락 등에서의 차별금지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통신서비스, 관광서비스에서의 차별금지 - 단체 등 운영에서의 차별금지 | (없음) | |
| 교육 | (공통) 교육기회, 교육내용, 교육기관장의 편의제공 의무 규정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에서의 차별금지 - 교육책임자의 의무 규정 - 자격증 취득·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| (없음) | |
| 행정 사법 | (공통) 참정권행사 및 행정서비스 이용, 수사·재판 절차에서의 동등대우 규정 | | |
| 제4장 차별의 구제 | | | |
| [인권위] 시정권고 | (공통)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, 조사 및 구제는 인권위법 준용 | | |
| [인권위] 시정명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건: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-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: 기간 내에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-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: 이의신청, 소제기, 집행정지 신청 | (없음) | |

| | 「차별금지법안」 2020년 장혜영 대표발의안 | 「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」 2020년 인권위 의견표명 시안 |
|---|--|--|
| [인권위] 법률구조요청 | -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구조요청 | (없음) |
| [인권위] 소송지원 | (공통) - 요건 :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결정 불이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- 세부 요건, 내용,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위임 | 소송지원변호인단 설치·운영 등 명시 |
| | (없음) | |
| [법원] 임사 적극 조치 명령 | (공통) - 임시조치 명령: 차별 소송 제기 전이나 제기 중, 차별이 소멸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명령 - 적극적 시정조치 판결: 차별 중지,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, 적극적 조치 등 판결 - 배상명령을 통한 간접강제: 적극적 조치 필요 판단 시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, 조치 불이행 시 지체된 기간에 따른 배상 명령 | |
| [법원] 손해배상 | (공통) 재산상 손해 입증 어려운 경우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손해 추정 | - 재산상 손해액 입증의 곤란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 인정 - 악의적 차별의 경우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(하한은 500만원) |
| | - 악의적 차별의 경우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(하한은 500만원) | |
| 증명책임 |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,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,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. | 제3조 제1항의 분리·구별·제한·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. |
| 적용범위 제한 | 시정명령, 손해배상, 증명책임에 관한 특례규정은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 | (없음) |
| 정보 공개 의무 | (공통) - 고용 관련하여 차별 피해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차별의 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가능 - 사용자 등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, 공개 거부 또는 기한 내 미공개 시 차별로 추정 | |
| 불이익 조치 금지 | (공통) 차별피해자 및 관계자의 진정, 진술, 증언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| - 불이익 조치의 무효 - <u>가중적 손해배상</u> 부담 - <u>3년 이하 징역</u>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| - 불이익 조치의 무효 -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 |

IV. 쟁점 및 분석

1. 용어의 정의

: 성별, 성적지향, 성별정체성, 괴롭힘

2. 차별의 개념

: 차별 사유, 차별 영역, 직접/간접/괴롭힘/광고

3. 차별의 예외

: 합리적인 이유, 진정직업자격, 적극적 조치, 다른 법률

4. 차별금지영역과 차별의 예외 인정 여부(특히, 고용, 교육)

5. 시정명령/이행강제금

6. 가중적 손해배상(낮은 차원의 징벌적 손해배상)

7. 불이익조치의 금지와 형벌

V. 결론 : 대안입법운동의 필요성

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

그 자체에는 찬성하면서

수정 보완(예외사유 등)을 요구

필자는. 이성애자 개신교인
동성애를 하나님 앞에 죄라고 고백

그러나,
동성애가 이성애자들의 성적 타락보다
몇 백배 큰 죄???

사회적 부조리(不條理)와
부정의(不正義)와 타락(墮落)에 비하면?

미국 보수 개신교인들의 <이혼> 반대, <낙태> 반대,
<동성애 차별금지> 반대 운동의 역사가 주는 교훈

쌍방 간에 혐오와 증오를 확산

반대운동에 대한 반작용(反作用) 등에 의해
양심/종교/사상/표현의 자유가
예전보다 위축되는 경향

그 결과 개신교는 일반 시민사회와 격리되고
다음 세대 및 예배 참석 성도들의 양적 축소
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 저하

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은?

동성애 반대 =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로
나아갈 것인지?

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에는 찬성하지만, 양심/종교/사상/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규범조화적으로 세밀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?

혐오와 증오를 양산시키는 종교로 전략할 것이 아니라,
동성애가 신앙적으로는 '죄'라고 선포하면서도,
그분들을 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게 되기를 소망

- 가짜 뉴스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
- 남의 말만 듣지/믿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자
- 성도답게, 사랑과 공의의 마음으로, 황금률을 실천하자
- “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”(마태복음 7:12)